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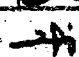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법무 11010-477

시행일자 1996. 3. 4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위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		
법제계장			
기안	김철수 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간행물관매보급규정증개정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간행물관매보급규정증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훈령안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훈령제 831 호

1. 서울특별시간행물관매보급규정증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1 호 2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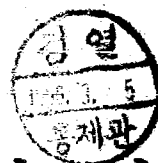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훈령발령 봉보

1. 서울특별시간행물관매보급규정증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6. 3. 11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1 호(생략). 끝.



# 서울특별시

# 서울특별시시간행물관매보급규정중개정규정안

## 1. 개정이유

1996. 1. 15.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공보1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(안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필요없음

## 서울특별시간행물판매보급규정중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간행물판매보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중 "공보1담당관"을 각각 "공보담당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간행물판매보급규정중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6년 3월 11일

서울특별시장

